

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76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8. 26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8. 26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9. 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증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·집행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「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」를 「고성군민간투자사업
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」로 재명 개정
나. 목적 조문개정 (안 제1조)
다. 구성 조문개정 (안 제2조제3항)
라. 기능 조문개정 (안 제4조)
마. 간사등 조문개정 (안 제7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와 관련하여 증장기 민간투자계획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재명과 조문의 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9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